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역량 중심의 인재선발 및 그간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자격증 가점조항 및 응시자 우대조항 신설, 별표 정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역량 중심의 인재선발 및 수험생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자격증 가점을 채용시험 만점의 1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제4항)
-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취업보호) 등에 따라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의사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응시할 경우, 각 시험단계별·과목별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33조의3)
- 다. 의무경찰 복무제도('23.6.4) 및 의무경찰 경력경쟁채용 폐지('25.2.25.)에 따른 해당 응시연령(20~30세)을 삭제함(안 별표 3)
- 라. 미국 교육평가위원회(ETS)에서 시행하는 토플(TOEFL) 시험 중 종이 시험(PBT) 미시행에 따른 해당란을 삭제하고, 온라인 시험(IBT)만 유지함(안 별표 7)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을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에 제4항에 따른 가점을 반영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가 취득한 점수(시험단계별 득점을 각각 100점으로 환산한 후 제3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를 말한다)에 만점의 1퍼센트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가점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위 이하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가공

무원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응시자의 각 시험단계별·과목별 득점(제31조 단서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시험단계·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점수를 가산하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시험단계별·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가.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 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상자

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각 시험단계별·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실시권자”로 본다.

별표 3의 순경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 중 “제16조제3항제2호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연령은 20세 이상 30세 이하로 하고, 제16조제3항제5호”를 “제16조제3항제5호”로 한다.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경정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7세 이상 45세 이하
경감	-	23세 이상 45세 이하
경위	21세 이상 40세 이하	
경사·경장	-	20세 이상 40세 이하
순경	18세 이상 40세 이하	18세 이상 40세 이하 (제16조제3항제5호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연령은 17세 이상으로 한다)

별표 7의 토플(TOEFL) 중 “그 실시 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 및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를 “IBT(Internet Based Test)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란을 삭제한다.

시험의 종류		기준 점수		
		경정	경위	순경
토플 (TOEFL)	미국 교육평가위원회(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IBT(Internet Based Test)를 말한다.	IBT 71점 이상	IBT 58점 이상	IBT 52점 이상
토익 (TOEIC)	미국 교육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625점 이상	550점 이상

테프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40점 이상	280점 이상	241점 이상
지텔프 (G-TELP)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Level 2의 50점 이상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520점 이상	457점 이상
토셀 (TOSEL)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Advanced 690점 이상	Advanced 550점 이상	Advanced 510점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우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공고된 시험에 대해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시험의 합격결정) ①·② (생략) ③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다음 <u>각 호의 방 법에 따라 산정한</u> 성적의 순위 에 따른다. 1. ~ 6. (생략) <u><신설></u>	제33조(시험의 합격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에 제4항에 따른 가점을 반 영한 ---.</u> 1. ~ 6. (현행과 같음) ④ <u>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 경쟁채용시험등(「해양경찰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 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한 경 력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 당 응시자가 취득한 점수(시험 단계별 득점을 각각 100점으로 환산한 후 제3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를 말한다)에 만점의 1퍼센트 범위 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가 점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u>

<신 설>

다.

제33조의3(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
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위 이하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
의2제1항에 따라 응시자의 각
시험단계별·과목별 득점(제31조
단서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
다)에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응시자
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시험단계·과목이 있거
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
인 경우에는 점수를 가산하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각 시험단계별·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가. 「국가공무원법」 제36조
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가공무원법」 제36조
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상자

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각 시험
단계별·과목별 만점의 3퍼센
트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에 관
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실
시권자”로 본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연령(제29조 관련)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경정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7세 이상 45세 이하
경감	-	23세 이상 45세 이하
경위	21세 이상 40세 이하	
경사·경장	-	20세 이상 40세 이하
순경	18세 이상 40세 이하	18세 이상 40세 이하 (제16조제3항제5호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연령은 17세 이상으로 한다)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제31조제1호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 점수		
		경정	경위	순경
토플 (TOEFL)	미국 교육평가위원회(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IBT(Internet Based Test) 를 말한다.	IBT 71점 이상	IBT 58점 이상	IBT 52점 이상
토익 (TOEIC)	미국 교육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625점 이상	550점 이상
텡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40점 이상	280점 이상	241점 이상
지텔프 (G-TELP)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Level 2의 50점 이상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520점 이상	457점 이상
토셀 (TOSEL)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Advanced 690점 이상	Advanced 550점 이상	Advanced 510점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32) 835 - 2236